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배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본 동의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 ①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

- 2001. 12. 8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서구 복수동)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구 서부경찰서(서구 용문동)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 그동안 서부소방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2007. 5. 30 우리시 핵심지역의 소방안전대책과 소방력 균형배치를 위하여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서부소방서를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로 변경하여 이전을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
- 일반에게 매각하여 서부소방서 이전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비용, 특구소방서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 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36조(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②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각

- 1998. 10. 9 대덕구 목상2통 이주자 택지매각 용도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회계간 이관으로 취득한 대덕구 목상동 871번지에 대하여,
- 2007. 5. 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대덕구에서 새여울국민체육센터(구 목상동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대덕구에 매각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③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 취득

-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구 산직동 88-2번지 외 2필지에 제2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음.
- 수탁자인 중앙의료재단에서 병원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병원 건립반대민원 해소과정에서 수탁포기 각서 및 마을 발전기금 등의 문제 발생으로 수탁기관의 지위를 포기 신청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였음.

- '07. 4. 27 ~ 5. 28까지 수탁기관 재 공모결과 동구 하소동 432-16외 2필지를 병원부지로 제안한 중앙의료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 되어, 병원부지의 위치가 변경되고 국고 보조금지원액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제2시립노인 병원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①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

- 위 치 : 서구 용문동 249-9 번지(구 서부경찰서 부지)
- 면 적
  - 토 지 : 3,228.3m<sup>2</sup>
  - 건물 연면적 : 3,951.95m<sup>2</sup>
  - ※ 건축년도 : 1974년도(1984, 1989년에 일부 증축)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재산가액 : 5,172백만원 (토지 4,455 / 건물 717)

②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각

- 위 치 : 대덕구 목상동 871 번지
- 면 적
  - 토지 : 5,013.2m<sup>2</sup>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재산가액 : 2,035백만원(개별공시지가 m<sup>2</sup>당 406,000원)

③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 취득

가. 제2 시립노인병원 건립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구 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전	서구 산직동 88-2외 2필지	4,990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3,992 - 136병상	4,703	'07~'08
변경 후	동구 하소동 432-16외 2필지	6,144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4,570 - 134병상	4,908	'07~'08

나. 병원부지 취득(기부채납)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금액	공시지가 (1m <sup>2</sup> 당)	소유자
변경 전	3 필지		4,990	174		
	서구 산직동 88-2	전	676	36	53,400원	중구 태평동 박천중
	서구 산직동 91	답	2,615	84	32,000원	중구 태평동 박태건
	서구 산직동 92	답	1,699	54	32,000원	
변경 후	3 필지		6,144	242		
	동구 하소동 432-16	답	1,020	71	70,000원	하소동326 김중배
	동구 하소동 425-12	전	1,714	91	53,400원	
	동구 하소동 425-3	전	3,410	80	23,400원	석교동89-1 남영수

### 3. 검토의견

#### ○ 본 동의 안은

당초 서부소방서의 이전 대상지인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계획 변경에 따라 매각하고, 대덕구에서 건립 예정인 새여울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하며,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 취득의 대상지를 당초 서구 산직동에서 동구 하소동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본 동의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은 그동안 구) 서부경찰서 부지에 서부소방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서부소방서를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로 변경하여 이전토록 변경 동의함에 따라,

서구 용문동 249-9번지 토지 3,228.3㎡, 건물 3,951.95㎡를 일반에게 매각하여 서부소방서 이전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비용, 특구 소방서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 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임.

다음으로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각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대덕구 목상동 871번지

5,013.2m<sup>2</sup>의 시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대덕구에 매각하기 위한 사항임.

다음으로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은 당초 서구 산직동 88-2번지 외 2필지에 제2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주변 지역 주민의 병원건립 반대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을 포기하였으며,

수탁기관 재 공모결과 동구 하소동 432-16외 2필지를 병원부지로 제안한 중앙의료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 되어, 병원부지의 위치가 변경되고 국고보조금지원액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 ○ 본 동의 안 검토결과

먼저,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은, 서부소방서의 구)서부경찰서 부지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변경,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과 소방력 균형배치를 위하여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새여울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각은, 대덕구에서 목상동에 새여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시유지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 취득은,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 하소동에 제2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당초 예정지인 서구 산직동의 경우 병원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병원건립 반대민원 등으로 수탁기관의 지위를 포기 신청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등 노인병원 건립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 등 건립부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현장방문 결과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